

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1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1. 17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1. 2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1. 2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고성군의 문화예술·관광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재단 명칭 변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변경

- 현행: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
- 변경: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

나. 재단법인 설립 목적(안 제1조)

- 고성군의 문화예술·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의 문화 복지 증진

다. 법인의 설립 및 운영(안 제2조)

- 지역문화진흥법, 민법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

라. 법인의 명칭 변경(안 제3조)

- 현행: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
- 변경: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

마. 재단의 사업(안 제4조)

-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관련 업무

-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
-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등
- 국가경상남도·고성군이 위탁한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바. 재단의 재산(안 제5조)

- 고성군의 출연금, 사업수익금, 그 밖의 수입금

사. 재단의 수익사업(안 제6조)

- 군수의 승인을 받아,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 시행

아.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
-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
- 재단의 설립 및 운영, 시설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
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

자.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고·검사, 공무원의 파견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차. 잔여재산의 귀속(안 제11조)

카. 엑스포 입장료 감경(안 제12조)

- 고성군민에 대해 엑스포 입장료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

타. 보상금 등 지급(안 제13조)

- 엑스포 입장권 현장 구매자 및 고성군 관내 숙박업소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품권 지급
-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, 상품권 등 경품 제공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민법」 제32조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확보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40436(2023. 10. 23.)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71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0. 12. ~ 2023. 11. 0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: 붙임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제명 변경
 -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
→ 고성군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
 - 목적(안 제1조)
 -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여 조례 전부 개정 취지를 명확히 하였음.
 - 법인의 명칭 변경(안 제3조)
 -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
→ 재단법인 문화관광재단
 - 재단의 사업(안 제4조)
 -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범위 내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음.
 - 재단 사업으로 단계적 확장 계획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행정사무와 재단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,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업무 및 사업 위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재단의 재산(안 제5조), 수익사업(안 제6조)
 - 출연금,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산을 조성하고, 군수 승인 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은 적절해 보임.
 -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 - 업무 위탁과 필요 경비 지원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음.

-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(안 제8조), 보고, 검사 등(안 제9조), 잔여재산의 귀속(안 제11조)
 - 재단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, 수행 업무에 대한 검사, 재단 해산의 경우 재산 귀속에 관한 명시는 재단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에 적절히 포함시켰음.
 - 공무원 파견(안 제10조)
 -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공무원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입장료의 감경 등(안 제12조), 보상금 등(안 제13조)
 -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고성군민 입장료 감경과 현장입장권 구입에 대한 보상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규정은 지원 근거 필요와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 - 부칙
 - 조례 시행을 위해 정관 제정, 직원 채용, 예산 등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과 재산, 권리·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필요 조치로 판단됨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고성문화관광 재단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3. 11. 29. 원안가결